▌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1호 [2012. 6] : 21～55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김달관 · 조영현**
(Kim, Dal-Kwan · Jo, Young-Hyun)

〈Abstract〉

El Sumak Kawsay de Ecuador como la Reforma Descolonial del Estado: Enfocado al Aspecto Práctico.

El acontecimiento de 9.11 en 2001, la crisis financiera en 2008 y la crisis fiscal en 2011 revelaron la cuestión fundamental sobre la modernidad occidental. El traslado desde la sociedad de 20:80 en las décadas de 1990 a la sociedad de 1:99 en la manifestación reciente de "Occupy Wall Street(OWS)" en los Estados Unidos se mostró que el capitalismo está implosionándose por la polarización de contradicción social. Si entendemos esta vertiente por la manera de Kal Polanyi, está ocurriendo la gran transformación por las explosiones fuertes que están estalladas colisionándose mutuamente, por una parte el proceso que el liberalismo del mercado está expandiendo por el neoliberalismo y por otra parte "el movimiento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E-mail: mundokdk@hanmail.net / E-mail: latin-jo@hanmail.net

dual" como el proceso de autodefensa de la sociedad que es un conjunto de la humanidad, la que no es reducida simplemente al trabajo.

Este artículo es analizar Sumak Kawsay que ha aparecido como el nuevo paradigma en el proceso constituyente en 2007-2008. Para investigar en la perspectiva práctica el Sumak Kawsay de Ecuador como la reforma descolonial del Estado en el capítulo II de este artículo vamos a indagar a través de la Constitución de 2008, ① Sumak Kaway como la convivencia ②Sumak Kawsay como el Estado de Derechos ③Sumak Kawsay como el Estado de Justicia. En el capítulo III, vamos a estudiar el Sumak Kawsay como la práctica concreta ①Iniciativa Yasuní-ITT ②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③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En el capítulo IV, vamos a tratar de los retos y límites del Sumak Kawsay, y en el capítulo V, las implicaciones del Sumak Kawsay.

[Key Words: Ecuador/ Descolonial/ Reforma del Estado/ Sumak Kawsay/ Convivencia]
[주제어: 에콰도르/ 탈식민/ 국가개혁/ 수막 카우사이/ 공생]

Ⅰ. 서론

1. 문제제기

2001년 9.11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재정위기는 서구 근대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1990년대 20:80 사회에서,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1:99 사회로 이동은 사회적 양

극화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내파(Implosion)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식으로 이해하자면, 신자유주의에 의해 시장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총체인 사회의 자기보호 과정으로서 '이중적 운동'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파열음으로 인해 거대한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칼 폴라니 2009).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류의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항헤게모니운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출현하고 있다. 1990년대 쿠바는 이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맞는 "토착적 사회주의"를 헌법에 명시했고,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Socialismo del Sumak Kawsay)"를 강조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유럽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출현한 고유의 사회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원주민 운동에서 촉발된 대항헤게모니운동에서 예를 들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경우에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 "다문화성"(Pluriculturalidad),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 "수막 카우사이", "수마 카마냐"(Suma Qamaña), "파차마마"(Pachamama, 자연)와 공생을 주장했고, 멕시코의 원주민 운동은 "자율성"(Autonomía)과 "영토성"(Territorialidad)을 강조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대항헤게모니운동은 포스트-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식민적(Descolonial)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데(현지인터뷰 로사노), 특히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경우 정복・식민 그리고 독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타자들은 '역사적 정의'(Justicia Histórica)를 요구하고 있다(현지

인터뷰 말도나도). 이에 정의의 회복으로서 최근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제헌과정은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정의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대항헤게모니운동이 보다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치실천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실천 사이에 괴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 현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4개로 정리할 수 있다(Santos 2007, 26-27). 첫째, 정치이론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미국 등 북반구에서 기원하며,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북반구 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보편적이라고 여겨지고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현재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쉽게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정치이론은 서구 북반구에서 발생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론의 발전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0년 동안 실제적으로 큰 변화들은 남반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정치이론은 유럽중심주의적 문화의 역사적 틀을 공유한 단일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중심주의적 문화가 원주민 문화처럼 서구적이지 않은 다른 형태의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비판이론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식민성 현상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과 정치이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식민성(Colonialismo Social) 또는 내적 식민성(Colonialismo Interno)처럼 식민주의가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식민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이후 식민성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라틴아

메리카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위적 이론'이 아니라 '후위적 이론'(Teorías de Retaguardia)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후위적 이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항헤게모니운동의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헤게모니운동은 2개의 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자본주의로의 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성에서 탈식민성으로의 이행이다. 본 연구는 특히, 탈식민적 이행을 에콰도르 국가개혁의 중요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탈식민적 이행이란 권력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Poder)의 근간인 '인종주의적 정의'(Justicia Racial)를 넘어서는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과 문화가 공존하며(un Estado Plurinacional), 원주민 세계관의 반영인 자연과 조화로운 공생 추구를 의미한다. 특히 자연과 공생은 인간중심주의(Antropocentrismo)에서 생명중심주의(Biocentrismo)로의 변화이고, 이것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서구 근대성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며, 포스트-자본주의 지향을 의미한다.[1] 이러한 맥락에서 에콰도르의 2007-2008년 제헌과정에서 수막 카우사이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헤게

1)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존재를 중시한다. 인간중심주의 하에서 모든 수단과 가치는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은 단지 대상적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에서 가치는 인간을 위한 이익에 봉사하고, 그에 따라 인간을 위한 가치가 구조화되며, 이에 환경은 조작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면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체와 비생명체도 고유의 가치를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도 고유한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한다. 이에 자연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반영으로서 신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헌법 제71-74조에 반영되어 있다.

모니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이다(Gudynas 2011a, 3).

에콰도르의 2008년 신헌법에 등장한 수막 카우사이는 키추아(Kichwa)어로서 수막(Sumak)은 충만함(Plenitud), 위대함(Grandesa), 존엄(Digna), 아름다움(Hermoso), 멋있음(Lindo) 등을 의미하고, 카우사이(Kawsay)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의미한다. 수막 카우사이는 키추아로 "자연친화적인 안데스 원주민의 좋은 삶"이고 스페인어 번역어는 "El Buen Vivir"이다. 그러나 "El Buen Vivir"(좋은 삶)가 수막 카우사이의 직역이지만, 수막 카우사이와 El Buen Vivir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 원어와 직역 사이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쨌든 수막 카우사이는 신헌법을 관통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Un Concepto Holístico y Integral)으로서, 헌법 전문에서 "다양성,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목표로서 위상도 포함하고 있다.[2] 수막 카우사이는 도덕적·윤리적 원리를 넘어서는 권리로서(Derechos del Buen Vivir), 권리국가(Estado de Derechos)를 지향하고 있으며(현지인터뷰 미첼레나), 헌법 제12-34조에 명시되어 있다.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Régimen del Buen Vivir)는 ①포용과 공정 ②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 헌법 제340-415조에 나타난다. 또한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Régimen de Desarrollo)는 헌법 제275-339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헌법조항은 총444조에서 모두 161항에 이른다.

수막 카우사이는 세계 주변부 국가의 주변부 사회부문인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에서 유래했다. 수막 카우사이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은폐되었던 원주민 세계관에서 유래하고, 열등하고 야만적이

2) 에콰도르 2008년 신헌법 전문에 수막 카우사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Una nueva forma de convivencia ciudadana, en diversidad y armonía con la naturaleza".

며 추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타자들의 것이었다(현지인터뷰 다발로스). 그러나 2008년 신헌법에서 이처럼 주변화 되고 잊어졌던 이들의 언어와 사상이 수용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수막 카우사이는 공동체적 체계로서 공생의 집단적 구성이다(현지인터뷰 안투니, 촐랑고). 그러나 수막 카우사이는 다른 존재방식으로서 자연과, 인간과 인간 공동체 사이에 조화로운 공간으로서 공생이다(현지인터뷰 오르티스, 엔리케스). 신헌법의 수막 카우사이는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복지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보로서 발전 이념에 반대하며, 권력의 식민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 세계의 역사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다른 보편적 인류의 철학적 원칙에도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는 사상의 보편성 신화, 단하나의 과학, 단하나의 삶의 방식, 지식의 유일한 진리, 동질적 문화, 단하나의 세계경제가 아니라, 복수의 가치, 복수의 모델, 복수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즉 수막 카우사이는 단일 보편성(Uni-versalidad)에서 다양성, 공생, 공감, 공유, 공공성, 공동체에 기초한 다(多)보편성(Pluri-versalidad) 및 이(異)보편성(Di-versalidad)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수막 카우사이는 복수적(Plural)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는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현지인터뷰 촐랑고, 에체베리아).

2. 연구방법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콰도르의 2008년 제헌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수막 카우사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막 카우사이 개념 형성에 사상적, 담론적, 실천적 측면이 있는데, 사상적 측면은 발전의 개념적 기

초, 특히 진보이념에 대한 급진적인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는 발전 그 이상의 측면이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관련이 있다. 담론적 측면은, 특히 이러한 사상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경제성장이나 서구의 복지로서 물질소비담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 또는 이익추구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수막 카우사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와 다른 관점을 지향하고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시키고 있다. 실천적 측면은, 변화를 위한 정치프로젝트, 정부계획, 전통적 발전에 대한 대안의 기준, 법률, 헌법, 정책 등 구체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Gudynas 2011a,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에콰도르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 인터뷰, 문헌연구 등을 실시했다.[3] 선행연구로는 오비에도(Oviedo 2011)의 『수막 카우사이/삶의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수막 카우사이를 다루기보다는 안데스 지역의 철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아코스타(Acosta 2009)의 편저

3) 에콰도르 현지조사는 2012년 1월18-2월9일까지 3주간 키토에서 진행되었다. 이하는 인터뷰 대상자 명단이다; ①에콰도르의 다국민연합운동으로서 정당 성격을 갖는 "파차쿠틱"(Pachakutik)의 당직자인 라파엘 안투니 카타니(Rafael Antuni Catani) ②에콰도르의 대표적인 원주민 단체인 CONAIE 대표인 움베르토 촐랑고(Humberto Cholango) ③환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이며 여성 변호사인 마르셀라 엔리께스 바스께스(Marcela Enríquez Vásquez) ④가톨릭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파블로 다발로스(Pablo Dávalos) ⑤전 복지부 장관이자 원주민운동단체(Centro de Estudios de Buen Gobiernos y Sumak Kawsay para las Nacionalidades y Pueblos del Ecuador)의 대표인 루이스 말도나도(Luis Maldonado) ⑥정부기구로서 대통령 직속기구(Consejo de Desarrollo de las Nacionalidades y Pueblos del Ecuador: CODENPE)의 담당자인 알프레도 로사노(Alfredo Lozano) ⑦가톨릭대학의 법대 교수인 훌리오 미첼레나(Julio Michelena) ⑧안데스 대학의 교수인 파블로 오르티스(Pablo Ortiz) ⑨FLACSO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훌리오 에체베리아(Julio Echeverría) 등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밖에도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녹음을 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수막 카우사이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로서『잘 삶: 발전을 위한 길』은 수막 카우사이를 발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여러 저자의 글을 모은 것이다. 로아(Roa 2009)의 논문인 "권력의 탈식민성의 표현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수막 카우사이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수막 카우사이에서 권력의 탈식민적 측면을 보다 많이 다루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김달관의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에서 수막 카우사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있다(김달관 2011b, 13-15).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2008년 신헌법을 중심으로 ① 공생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②권리국가로서 수막 카우사이 ③정의로운 국가로서 수막 카우사이 측면을 분석한다. 제3장은 구체적 실천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①야수니 ITT 기획을 살펴보고 ②신헌법 제280조에 근거한 "수막 카우사이를 위한 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을 고찰하며 ③사회적 연대경제 법을 조망한다. 제4장에서는 수막 카우사이의 도전과 한계를 살펴보고,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의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Ⅱ.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2008년 헌법

1. 공생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정의(Justicia) 이론 분석에서 일반적인 2개의 질문은 누가 정의의 원칙을 규정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1830-1929년 동안 에콰도르 헌법은 과두지주세력을 위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부(富)는 권력을 보존하는 기제로 작동했고 국가는 과두지배세력 재생산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에콰도르 독립이후 헌법인 1830년 헌법 총75개항은 배제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헌법 제12조는 시민권자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결혼한 자 또는 22세 이상인 자 ②300페소 이상 부동산 소유자이면서,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유용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③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당시 인구의 90%가 배제되었고, 1950년 헌법규정에 의하면 44%가 제외되었으며, 1980년 헌법규정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25%가 배제되었다(Ramírez 2010a, 57). 이처럼 모든 헌법은 역사적 순간의 결과물이며 축적된 사회과정의 결정체이다. 또한 모든 헌법은 삶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을 표현한다. 따라서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 과정의 저항과 사회투쟁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이 깃들어 있다. 이에 헌법은 한 국가에서 국민의 삶을 규제하는 단순한 법률체계일 뿐만 아니라, 존재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콰도르의 1998・2008년 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4] 라미레스(René Ramírez)는 정의의 분석관점에서 헌법을 분석하기 위해

4) 왜냐하면, 에콰도르 역사에서 보면, 1990년 원주민 봉기 이후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1997년 압달라 부까람 대통령을 강제로 퇴진시키면서 국민의 제헌 요구에 의해 1998년 신헌법이 제정되었으나 그것은 국민의 여망을 실현 했다기보다는 엘리트 간의 협약이었다. 즉 1998년 신헌법이 민주화를 촉발시킨 1978년 헌법보다는 국민의 권리가 보다 향상되었지만,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에콰도르 엘리트의 이해를 주로 반영한 헌법이었다. 하지만 1999년 금융위기, 2000년 하밀 마우앗 대통령의 강제퇴진, 2005년 루이스 구띠에레스 대통령의 강제퇴진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였던 꼬레아(Rafael Correa)와 “국가동맹”(Alianza País)에 의해 2008년 신헌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에 2008년 신헌법은 엘리트 간의 협약인 1998년 헌법보다 더 진보적이며 국민의 여망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김달관 2011a, 75-87).

‘정보의 기초’(Base de Información), ‘배분기준’(Pauta Distributiva), ‘분석단위’(Unidad de Análisis), ‘사회선택’(Elección Social) 등 4가지 요소로 분석했다(Ramírez 2010a; 2010b; 2011b). 정보의 기초란 특정한 선호에 따른 변수로서, 제한된 사회적・공적 자원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된다. 이러한 결정은 제한된 사회적・공적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어디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의미한다. 배분기준이란 선호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기초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배분방식이다. 분석단위는 이러한 배분방식에 따라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누구에게(개인, 집단, 지역, 사회) 배분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사회선택은 집단적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1998년 헌법은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이 중요하게 투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용과 자유주의적 원리가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1998년 헌법에서 정보의 기초는 소득과 소비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있을 뿐이다(Ramírez 2010a, 60-61). 2008년 헌법에서 정보의 기초는 헌법의 전문에서 “공생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언급한 수막 카우사이이다. 이것은 2008년 헌법이 추구하는 것이 소득, 소비, 1인당 GDP 등이 아니라, ‘함께 잘 공생하는’(Convivir Bien) 방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헌법 제275조). 1998년 헌법에서 배분기준은 최소한의 생존보장에 기초한 사회정책과 시장을 통한 것이다. 2008년 헌법의 배분기준은 경제적 관점에서 소수의 경제엘리트를 위한 국가를 지양하고, 사회적 유대에 기초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생산과 조직을 지향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헌법 제276, 278, 281, 283, 321, 334, 335조). 왜냐하면 수막 카우사이의 경제에 대한 기본가치가 ‘사회적이고 유대적인’(Social y Solidario) 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사이의 “경제적 식인주의”(Canibalismo Económico)를 촉발시키는 현실로서 자유경쟁

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는 현재와는 다른 경제를 지향한다(Acosta 2010, 23). 무엇보다도 2008년 신헌법은 사회적이고 유대감에 기초한 경제로서 인간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다. 따라서 경제는 자본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향상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삶 그자체가 목적이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적 경제에서는 자본보다 노동이 보다 중시된다(Larrera 2010, 22). 이러한 관점에서 수막 카우사이는 평등주의적 배분기준을 갖고 있다. 1998년 헌법에서 분석단위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만족을 지향하는 원자적이고 고립적인 개인이다. 그러나 2008년 헌법에서 분석단위는 개인에서 사회, 집단, 영토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헌법 제57, 58, 59, 60, 285, 321조). 즉 고립적인 존재로서 개인을 보는 관점에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공생, 상호호혜, 관계, 보완, 연대에 중심을 둔 공동체적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다. 1998년 헌법에서 사회선택은 시장에서 구매의 선호표현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것이다. 2008년 헌법에서 사회선택은 보다 창의적인 논의를 거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려는 방식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헌법 제95-117조). 결론적으로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헌법에서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공생임을 알 수 있다.

(표1) 2008년 헌법의 수막 카우사이 실현 방식

구분	1998년 헌법	2008년 헌법
정보의 기초	소득, 소비	공생
배분기준	시장	사회적 연대
분석단위	개인	공동체
사회선택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기본원리	신자유주의	공생의 생태평등주의

자료: 라미레스(Ramírez 2010a; 2010b; 2011b)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편집했음

2. 권리국가로서 수막 카우사이

에콰도르 2008년 헌법은 기존의 사회적 법치국가(Estado Social de Derecho), 또는 헌법적 법치국가(Estado Constitucional de Derecho)에서 '권리국가'(Estado de Derechos) 모델로 변모했는데(현지인터뷰 미첼레나), 이것은 의무의 시대에서 권리의 시대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은 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볼리비아의 수마 카마냐와 차이가 있는데, 수마 카마냐는 윤리적・도덕적 원리이지만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는 윤리적・도덕적 원리를 넘는 권리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과 관련하여 국가형태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보면, 법 위에 있는 국가(절대국가), 법에 의한 국가(법치국가), 천부인권에 의한 국가(권리국가) 등 3개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국가에서는 국가(절대군주)가 권리를 제한하고,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국가를 제한하며, 권리국가에서는 천부인권이 국가를 제한한다. 즉 권리국가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특별하게 인정된 권리에 의해 권력이 제한되는 국가이다. 권력의 관점에서 국가를 구분하면, 절대국가에서 권력을 보유한 자는(절대군주) 사법체계를 절대군주의 의지에 복속시키고, 사법적 법치국가에서 의회는 법률을 통해 국가를 복속시키며, 헌법적 법치국가에서는 제헌의회가 헌법을 통해 모든 법률적 권력을 복속시킨다. 권리국가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고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의 역사적 권리가 제헌의회와 모든 권력을 복속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막 카우사이는 유럽의 정복・식민 그리고 에콰도르라는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원주민의 역사적・천부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다(Avila 2011, 121-23).

(표2) 국가의 형태

구분	절대국가	법치국가	헌법국가	권리국가
국가	국가(절대군주)가 권리를 구속	법이 국가를 구속	헌법이 국가를 구속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국가를 구속
권력의 원천	당국	의회	제헌의회	사람과 국민

자료: Avila 2011, 123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헌법에서 역사적·천부적 인간의 권리에 복속되는 권리국가 요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권리의 유효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의무이다(헌법 제3조1항)
-국가의 최고 의무는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헌법 제11조9항)
-모든 공적 이해와 관련 있는 참여는 권리이다(헌법 제95조)
-의회와 법률제정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은 권리에 반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다(헌법 제84조)
-공공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통제에 관한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고(헌법 제141조), 행정부는 권리를 보장한다(헌법 제85조)
-판사는 권리존중 원칙하에 사법체계를 관장한다(헌법 제172조)
-사회적 투명성과 통제기능은 권리 이행과 실천을 보호한다(헌법 제204조)
-선거기능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한다(헌법 제217조)

권리국가 관점에서 그밖에도 공공행정(헌법 제226조), 발전모델(헌법 제275조), 경제체제(헌법 제233조), 외채(헌법 제290조2항), 국가재정(헌법

제298조), 금융체제(헌법 제358조), 투자와 전략부문(헌법 제 339조), 생산(헌법 제319조)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천부적 권리에 복속되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2008년 헌법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법률이나 사법규정 그리고 공권력은 권리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84조)
-헌법은 최고의 규정이고 어떠한 다른 규정보다 상위에 있다(헌법 제424조)
-권리는 어떠한 공적기관이라도 즉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한다(헌법 제426조)
-모든 규정은 원리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헌법 제84조)
-공적 정책, 공적 서비스, 시민 참여 보장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헌법 제85조)
-판사를 통한 기제로서 사법적 보장은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헌법 제86-94조)

3. 정의로운 국가로서 수막 카우사이

정의(Justicia)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마이클 2010, 265). 따라서 정의에 관한 것은 “좋은 삶” 즉 수막 카우사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의 구현을 정치의 목적이라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역사적 정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복・식민 시대부터 라틴아메리카 자연자원의 풍부함은 서구의 강한 탐욕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인간적, 문화적, 언어적, 정신적 측면의 풍부함은 항상 관심 밖에 있었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흑인, 원주민, 혼혈인을 배제했던 유럽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은 현실과 동떨어진 타자의 방식을 강제했다. 이처럼 권력의 식민성의 기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문화, 지식, 지혜, 기술, 삶의 실천, 정신성은 비가시화 되었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Roa 2009). 이에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국가개혁으로서 2008년 신헌법에서 수막 카우사이의 중요성은 첫째, 유럽중심주의에서 원주민 세계관의 도입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1830년 독립이후에도 에콰도르는 유럽의 정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했지만, 2008년 신헌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질서와 정당성의 토대로서 원주민 전통에 속하는 수막 카우사이를 핵심개념으로 수용했다. 이것은 500년 동안의 '식민적' 권력질서 토대와의 단절이다. 이러한 식민적 헌법질서 단절은 원주민운동, 사회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 대항헤게모니운동에 의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이다. 둘째, 수막 카우사이는 다양성 속에서 공생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유럽적・기독교적 보편주의의 핵심인 단일문화(일원론) 개념을 극복했다. 즉 하나의 가치, 하나의 기준, 하나의 진리, 하나의 모델, 하나의 삶의 방식,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러한 척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그리하여 구조적 폭력을 양산했던 단일 보편성(Uni-versalidad)에서 다양성, 조화, 공감, 공유, 공공성, 공동체에 기초한 다보편성(Pluri-versalidad) 및 이보편성(Di-versalidad)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2008년 신헌법은 다양성 안에서 공생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도 중시하고 있다. 유럽전통에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분리되었고, 이에 자연은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원

주민 세계관의 핵심인 파차마마(Pachamama, 자연)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해야 하며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파차마마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공생을 위해 자연보존도 중시한다.

배제적 국가로서 에콰도르는 정복・식민 그리고 독립이후까지 원주민・혼혈인・아프리카계후손을 사회조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하였으나,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하는 정의국가에서는 이들을 사회조직으로 포용한다. 에콰도르는 정복・식민 그리고 독립이후까지 배제적 국가로서 권리측면에서 백인에게만 정치・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특권을 허용했다면,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하는 정의국가에서는 권리측면에서 500년 동안 배제되었던 원주민・혼혈인・아프리카계후손에 보편적 권리를 허용한다. 배제적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부정의 결과는 원주민・혼혈인・아프리카계후손의 구조적・제도적 차별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2008년 신헌법의 정의국가에서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배제와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종족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국가는 (표3)에서 보는 것처럼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표3) 배제적 국가와 정의로운 국가의 차이

구분	배제적 국가	정의 국가
사회조직	배제적	포용적
권리	특권적	보편적
구조	더 나쁘고 더 좋은 상황 존재	물질적 평등
결과	차별	평등

자료: Avila 2011, 162

본 장에서는 정의 문제를 2008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헌법은 수막 카우사이를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대감에 기초하는 평등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하는 구체적 원칙을 예시한 것이다.

-국가는 기본 원칙으로서 자원과 부를 공정하게 배분한다(헌법 제3조5항)
-불평등 상태에 있는 국민의 평등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는 노력한다(헌법 제11조2항)
-국가는 부와 수익배분을 보증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한다(헌법 제284조1항)
-적절한 재정지원, 조세, 보조금 등의 수단을 통해 국가는 수익배분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한다(헌법 제285조1항)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킨다(헌법 제334조2항)
-내부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교역정책을 진흥한다(헌법 제304조4항)
-금융부문은 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은 사회적 취약단체를 보다 우선시 한다(헌법 제310조)
-국가의 공적 서비스 가격과 요율은 공정해야 한다(헌법 제314조)
-국가는 소유권 접근 기회와 권리 측면에서 평등을 보장한다(헌법 제324조)
-국가는 다양성과 차별금지 측면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불평등, 배제, 차별, 폭력의 지속적인 상황으로 인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특정한 단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취한다(헌법 제334조)

-공교육을 위한 자원배분은 사회적・인구적・지역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주관한다(헌법 제347조)

Ⅲ. 구체적 실천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야수니 ITT 기획은 권리의 총제로서 수막 카우사이라는 측면보다는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꼬레아 정부의 수막 카우사이 실천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연대경제법도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의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꼬레아 정부의 야수니 ITT 기획, 수막 카우사이를 위한 계획, 사회적 연대경제 법 등은 수막 카우사이 실천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꼬레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야수니 ITT 기획(Iniciativa de Yasuní-ITT)

야수니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기획은 꼬레아 정부의 수막 카우사이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즉 꼬레아 정부의 야수니 ITT 기획은 수막 카우사이의 핵심적인 정책실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수니 ITT 기획단 대표인 이보니 바키(Ivonne Baki)는 2011년 12월 30일 야수니 국립공원의 원유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선진국으로부터 13년간 36억 달러를 모금하는 야수니 ITT 기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5] 이보니 바키는 2011년 현재 모금액은 1억2천만 달

5) 야수니 국립공원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장소 중의 하나이다. 야수니

러이고 2012-2013년에 약 2억9천만 달러 모금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야수니 ITT 기획의 명칭을 “야수니 세계를 달린다”(Yasuní recorre el mundo)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El Universo 2011년 12월 30일).

야수니 ITT 기획은 2007년 3월, 전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아코스타(Alberto Acosta)가 에콰도르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야수니 국립공원 내부인 ITT 지역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원유개발 수익 50%에 대해 선진국의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원유개발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이다(Lombeyda 2010, 4). 이러한 입장을 이후에 꼬레아가 받아들였고, 그는 2007년 유엔 정기총회에서 만약 국제사회가 원유개발 시 에콰도르가 얻게 될 이익의 50%를 지원한다면, 에콰도르 원유매장량의 20%로서 야수니 국립공원에 있는 8억5천만 배럴의 원유를 무기한으로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야수니 ITT 기획이다(http://yasuni-itt.gob.ec 인터넷 검색).

1972년부터 에콰도르는 석유수출 국가가 되면서 석유는 에콰도르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석유는 총수출의 53%를 차지했고, 2000-2007년 재정수입의 36%를 차지했다(Larrera 2011, 23). 이처럼 에콰도르에서 석유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야수니 공원에서 8억5천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약 25년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35년경에는 원유가 고갈될 것으로 알려졌다(Lombeyda 2010, 11). 이것을 가치로

국립공원은 1979년 창설되었고, 198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야수니 국립공원 면적은 982.000 헥타르로서 서울면적의 약 16배의 크기이다. 야수니 국립공원에는 약2274종의 식물군과 655종의 동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야수니 국립공원에는 약292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보다 많은 동식물이 야수니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593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새가 서식하고 있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

환산하면 2010년 현재 8억5천만 배럴의 원유는 약76억 달러에 이르고, 이것은 사용했을 때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계산하면 54억 달러에 이르며, 추가적 가치도 78억 달러에 이르러 총208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꼬레아 정부는 원유를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13년 동안 36억 달러를 지원한다면 무기한으로 야수니 국립공원 내의 원유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모금액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①지구 온난화 방지 ②생물다양성 보호 ③사회적 발전 ④과학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이다(Larrera 2011, 8).[6)]

이처럼 야수니 ITT 기획은 꼬레아 정부의 수막 카우사이 실천의 진정한 도전을 대표한다. 왜냐하면 자연과 공생, 지구 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야수니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원주민 보호 등은 파차마마 존중, 다국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수니 ITT 기획의 인정은 야수니의 원유가 세계의 공적이고 세계인 모두의 재화로서 의미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써, 자연의 가치, 세계적 수준에서 집단행위의 가치,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미래의 삶이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Ramírez 2010a, 62).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석유추출에 기초한 발전모델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시도하는 것이다.

---

6) 온실효과: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부분적으로 열에너지로 변하는데, 태양빛은 지구의 평균온도인 -22도에서 +14도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열은 온실효과의 6개 가스(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 오존, 프레온)에 의해 대기에서 유지된다. 산업혁명 후 1900-2009년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서 지구평균온도가 13.6도에서 14.4도로 증가했다. 이에 21세기 말에는 지구온도가 최소 1.8도 -5.8도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 인간 활동은 온도가 2도를 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2도를 넘어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2. 수막 카우사이를 위한 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에콰도르에서 차별과 배제의 역사는 세계화에 따른 변화, 새로운 생산·노동 모델의 출현, 비전통적인 가족모델, 인간 이동성의 결과로서 성별과 사회상황 사이의 관계 등으로 인해 최근에 보다 심오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콰도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기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구조로서 표현되는 배제의 방식과 조건은 특히,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혼혈인의 시민권을 제한한다. 부, 생산수단, 소득집중에 기초한 성장과 축적 모델의 배제/포용(Exclusión/Inclusión)의 순환이 첨예화되면서 에콰도르 사회의 불평등을 증대시켰고, 사회 정체성과 소속감의 역동성을 저해했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탈식민으로서 인종차별 극복과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빈곤과 인종 사이의 관계는 식민 시대부터 존재했던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권력의 식민성으로서 인종차별주의는 부와 권력, 사회적 위신과 명예, 사회적 편견을 위계적으로 배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인종과 빈곤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표4)에 의하면 2006년에 원주민의 빈곤은 70.0%, 아프리카계 후손은 48.7%, 혼혈인은 34.6%, 백인은 33.2%로서 백인은 인종구분으로 보면 가장 빈곤율이 낮고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편이며, 원주민은 빈곤과 극빈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편이다. 2004년 정부기구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의 65%가 에콰도르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으나, 인종차별을 자신이 실천한다는 답변은 10%로 나와 모순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Ministerio Coordinador 2009, 8). 이처럼 불평등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에서도 나타난다. 2008년 정부연구에 의하면, 집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95%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아프리카계 후손, 원주민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입장벽은 다른 에콰도르 국민과 똑같은 교육수준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ENPLADES 2009, 141-42).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특히, 인종차별 극복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헌법 제280조에 의거한 "수막 카우사이를 위한 계획"에서 10개의 기본목표를 설정했고, 89개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규정했으며, 19개의 구체적 실천목표를 확정했다.[7] 특히 인종차별 극복을 위해 행정부서(Secretaría de Pueblos, Movimientos Sociales y Participación Ciudadana)에서는 "인종차별과 인종적·문화적 배제 극복을 위한 다국민 계획"(Plan Plurinacional para Eliminar la Discriminación Racial y la Exclusión Étnica y Cultural)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Ministerio Coordinador 2009, 27-49).

---

7) -자가 주택보유비율을 2008년 67.7%에서 2013년까지 71%로 향상시킨다.
-고등학교등록 비중을 2008년 53.17%에서 2013년까지 66.5%로 향상시킨다.
-경제적 불평등을 2013년까지 적어도 1995년 수준으로 낮춘다. 소득지니계수를 2006년 0.46에서 2013년까지 0.42로 축소시킨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2008년 24.40%에서 2013년까지 40%로 증가시킨다.
-장애인의 정식직원 고용비율을 2007년 33%에서 2013년까지 40%로 확대한다.
-토지집중 비율을 2013년까지 22% 축소한다. 토지지니계수를 2008년 0.7836에서 2013년까지 0.6112로 감소시킨다.
-2013년까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재분배효과 누진율을 10% 향상시킨다.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카카와니'(Kakwani) 지수를 2008년 0.38에서 2013년까지 0.41로 향상시킨다(SENPLADES 2009, 151-160; 442-444).

(표4) 에콰도르에서 인종에 따른 불평등 (2006년)

구분	분석범주	인종				전체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혼혈인	백인	총
인구	가구비중(%)	7.3	5.5	79.4	7.7	100
	개인비중(%)	8.5	5.7	78.8	7.0	100
빈곤	빈곤(%)	70	48.7	34.6	33.2	38.3
	극빈(%)	41.2	13.7	10.1	8.9	12.9
소득과 소비	가구당 월평균 소비(US$)	$236	$328	$456	$500	$438
	가구당 월평균 소득(US$)	$305	$400	$545	$575	$522
	개인당 월평균 소득(US$)	$165	$210	$278	$316	$267
교육	문맹률(%)	28.8	12.6	7.48	6.7	9.13
	24세 이상 인구의 교육연령(년)	4.2	6.9	8.5	9.0	8.1
	초등교육 참여 비율(%)	93.4	92.3	94.7	92.9	94.3
	중등교육 참여 비율(%)	36.9	38.8	58.4	57.8	55.3
	고등교육 참여 비율(%)	4.7	8.2	20.1	16.0	18.09
	24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 비율(%)	2.52	7.24	14.66	14.50	13.03
	24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졸업 비율(%)	1.8	4.0	10.5	9.6	9.5
노동시장	경제활동인구(%)	87.8	71.6	70.6	67.8	71.2
	노동 가능인구(%)	63.3	68.6	72.9	74.3	72.0
	도시 실업률(%)	6.0	11.0	7.7	8.6	7.9
	도시 남성 실업률(%)	6.9	6.7	5.8	5.2	8.6
	도시 여성 실업률(%)	4.7	17.5	10.5	13.6	10.8
사회보험	일반사회보험가입률(%)	3.2	7.2	10.9	12.03	10.2
	농업사회보험가입률(%)	9.59	6.77	5.42	3.2	5.6
주택	자가 주택비율(%)	75.2	62.3	65.6	59.8	65.7
	공공상수도 가구비율(%)	29.9	32.3	43.6	46.5	42.2
	집 전화 보유 가구비율(%)	11.5	24.2	37.8	42.9	35.5
	인터넷서비스가입 가구비율(%)	0.2	0.4	2.7	4.6	2.5
	외국에서 송금을 받는 가구비율(%)	9.2	14.1	15.8	19.9	15.6
	충분한 음식마련을 못하는 가구비율(%)	23.3	23.1	13.9	12.2	15.0
	개인 휴대전화 보유비율(%)	17.2	32.8	39.8	43.0	38.1
차별	당신은 에콰도르 인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53.0	73.0	65.0	67.0	65.0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예((%)	11.0	5.0	10.0	14.0	10.0
	아프리카계 후손에 대한 인종편견 간접지수(%)	80.5	60.8	81.5	81.5	75.9

자료: Ministerio Coordinador 2009, 99-100

3. 사회적 연대경제 법(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사회적 연대경제 법은 헌법 제283, 281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고 총153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서 사회적 연대경제(Economía Social y Solidaria:ESS)는 인간을 주체와 목적으로 인정하고, 자연과 조화 속에서 사회・국가・시장 사이에 역동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지향하며,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의 생산・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 제283조). 따라서 사회적 연대경제는 얼마 전까지 바나나, 화훼, 새우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산품 수출전략이 실패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연대경제 법에서 사회적 연대경제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 경제 형식과 실천의 총체이다. 집단인 경우, 이익과 자본축적보다는 자연과 조화에 따라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하는 행위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인간을 중시하면서, 노동자・생산자・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제1조). 사회적 연대경제의 특징으로는 ①자가 고용 및 구성원의 필요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목적 추구 ②공동체의 지역 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공생 실천 ③구성원과 관계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음 ④어떠한 구성원에게라도 특권을 허용하거나 차별을 행하지 않음 ⑤민주적・참여적 자율경영, 자기통제, 자기책임성 ⑥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개인적 이해에 대한 집단적・공적 이해의 우위, 이기주의와 경쟁보다는 상호성과 협력의 우위 등이 있다(제3조). 여기에서 공적이해란 "사회적 연대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발전, 민주주의 실천, 정체성 보호, 부의 공정한 배분, 경제적・사회적 포용을 이룩하기 위해 효율적인 기제로서 사회적・연대적 경제조직의 진흥,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제5조). 또한 자율이란 "국가가 사회적・연대적 경제조직의 실천, 독립,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제6조). 그리고

사회적 연대경제의 가치는 “사회관계와 경제행위에서 사회적・연대적 경제조직은 정의, 정직, 투명,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에 구속되고, 상호 원조, 고유의 노력, 민주적 운영, 정의로운 사업의 실천, 윤리적 소비 등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제4조).

사회적 연대경제 법에 의해 승인된 조합은 1684개로서 60.7%는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32.4%는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6.7%는 아마존지역에 위치한다. 사회적 연대경제 법 진흥청(Instituto Nacional de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은 2009년 창설되어, 2009-2011년 동안 31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2억52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또한 2011년 204개의 사회적 연대경제 금융단체가 271,000 건의 사업을 통해 1억6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http://www.fae.usah.cl 인터넷 검색).

에콰도르의 경제모델은 사회적 연대경제(ESS)이다. 즉, 경제 역동성에 대부분의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무능과 불충분함을 인정한 것이다. 제도로서 국가 또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국민통합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시장과 국가가 국민을 시장경제에 통합하는 것에 실패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대자본으로부터 발생한 배제, 강탈, 착취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경제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에콰도르에서 고용과 부를 창출하고 많은 제약과 적대 속에서 창의적으로 진정한 국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다(http://lalineadefuego.info/2011/04/13 인터넷 검색). 다시 말하면, 수막 카우사이의 사회적 연대경제를 통해 자본주의가 파괴한 인간과 자연을 회복하면서 공생의 새로운 방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Ⅳ. 도전과 한계

에콰도르에서 수막 카우사이는 일정한 성과를 이룩했다. 예를 들면, 수막 카우사이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2008년 헌법을 관통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현지인터뷰 촐랑고, 로사노), 상호문화성교육법(Ley de Educación Intercultural) 및 사회적 연대경제법 등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었다(현지인터뷰 미첼레나). 또한 원주민의 사법적 정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현지인터뷰 엔리께스, 말도나도). 그럼에도 현재 수막 카우사이 실현을 위해 꼬레아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국가와 수막 카우사이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현지인터뷰 다발로스, 미첼레나). 그리고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가 헌법에는 '발전체제'(Régimen de Desarrollo)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막 카우사이가 진정으로 기존의 발전개념을 극복했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두 가지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이다.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도 꼬레아 정부는 수막 카우사이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구호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신에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을 가장 중요한 정치구호로 내세우고 있으며(현지인터뷰 촐랑고), 꼬레아의 "시민혁명"은 수막 카우사이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서구의 복지개념에 보다 가깝다. 다른 한편, 현실 정치인으로서 꼬레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석유개발에 의한 발전방식에 유혹이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경제발전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수막 카우사이는 한 번에 모두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대선에서 꼬레아 정부가 실패한다면 헌법을 다시 새롭게 제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현지인터뷰 미첼레나).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많은 성과를 이룩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많은 조항이 후속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뷰한 여러 사람이 용수(用水)법(Ley de Agu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제정된 법령도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막 카우사이를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이 계획은 전통적인 발전 사상에 의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목표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지만, 자원추출주의(Extractivismo)를 포함하여 계획이 전통적인 발전과 비슷한 도구와 과정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 연대경제 법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의 사회적 연대경제(ESS)의 위상이 주변부에 있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를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조달 부문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연대경제 법은 '조합부문'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동체부문'과 '연합부문'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50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켜켜이 쌓인 도전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수막 카우사이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지혜를 계속해서 수렴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정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

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수렴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Ⅴ. 결론

에콰도르에서 수막 카우사이는 이윤의 극대화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충돌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 에너지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인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 전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콰도르의 가장 취약한 집단인 원주민이 대항헤게모니운동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운동은 1990년 원주민 봉기를 기점으로 1997・2000・2005년 현직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직 대통령 3명을 강제로 퇴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김달관 2010, 51).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인 꼬레아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 2008년 신헌법에 원주민의 세계관인 수막 카우사이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수막 카우사이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총체로서 그리고 발전의 대안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2008년 신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수막 카우사이는 정복・식민 그리고 독립이후에도 계속된 권력의 식민성을 극복하려는 ‘역사적 정의’ 회복과 발전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선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현실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500년 동안 지속된 식민성을 하루아침에 다 고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 도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수렴의 과정

이 필요하다.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회집단의 피맺힌 절규와 고민의 결정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에 따른 계급적, 세대적, 지역적 모순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보다 심화된다면,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인해 에콰도르보다는 덜 하겠지만, 대항헤게모니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21세기 큰 변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향타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에콰도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일보편성에서 다보편성 및 이보편성에 기초한 조화, 공생, 공유, 공공성, 공감 등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달관(2011a),「민주화 이후의 에콰도르 민주주의: 1979-2010」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2권 1호, pp.63-91.

김달관(2011b),「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 pp.1-31.

김달관(2010),「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국민국가 형성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2호, pp.25-55.

마이클 샌델(2010),『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최현(2009),『인권』, 책세상.

칼 폴라니(2009),『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길.

Acosta, Alberto(2009),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Ediciones ABYA-YALA, Quito.

Acosta, Alberto(2010), *El Buen Vivir en el Camino del Post-Desarrollo. Una Lectura desde la Constitución de Montecristi,* Policy Paper 9. Fundación Friedrich, FES-ILDIS, Quito.

Acosta, Alberto y Esperanza Martínez(2011), *La Naturaleza con Derechos: De la Filosofía a la Política,* Ediciones ABYA-YALA, Quito.

Avila Santamaría, Ramiro(2011), *El Neoconstitucionalismo Transformador: El Estado y el Derecho en la Constitución de 2008*, Ediciones ABYA-YALA, Quito.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Cortez, David(2009), "Genealogía del 'Buen Vivir' en la Nueva Constitución Ecuatoriana", Ponencia Presentada en el VIII International Congress for Intrercultural Philosophy. Good Life as Humanized Life. Concepts of Good Life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ir Meanings for Politics and Societies Today, Seoul, Ewha Wamans University, 2009년 7월 3일, pp.1-17.

Díaz, Nidia(2010), "Constitucionalidad Posneoliberal y la Nueva Forma de Vivir Bien",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29-36.

El Universo(Diario), "Ecuador Extiende Plazo para la Iniciativa Yasuní-ITT", 30 de diciembre de 2011, http://www.eluniverso.com.

Esteva, Gustavo(2009), "Más allá del Desarrollo: La Buena Vid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445, Quito, pp.1-5.

Fatheuer, Thomas(2011), *Buen Vivir: A Brief Introduction to Latin America's*

New Concepts for the Good Life and the Rights of Nature, agit-druck, Berline.

Gudynas, Eduardo(2009), "Seis Puntos Claves en Ambiente y Desarrollo", en Alberto Acosta y Esperanza Martínez,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Ediciones ABYA-YALA, Quito, pp.39-49.

Gudynas, Eduardo(2011a), "Buen Vivir: Germinando Alternativa al Desarroll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462, Quito, pp.1-21.

Gudynas, Eduardo y Alberto Acosta(2011b), "El Buen Vivir más allá del Desarrollo", *Qué Hacer*, No. 181, Perú, pp.70-81.

Gudynas, Eduardo y Alberto Acosta(2011c), "La Renovación de la Crítica al Desarrollo y el Buen Vivir como Aternativa",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Iberoamericana y Teoría Social*, No.53, Venezuela, pp.71-83.

Harnecker, Marta(2010), "El Nuevo Modelo Económico del Socialismo del Siglo XXI. Algunos Elementos para la Discusión",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77-89.

Huanacuni, Fernando(2010), "Paradigma Occidental y Paradigma Indígena Originari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452, Quito, pp.19-24.

Larrera, Ana María(2010a), "La Disputa de Sentidos por el Buen Vivir como Proceso Contrahegemónico",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15-28.

Larrera, Ana María(2010b), "Primera Mesa: El Constitucionalismo Postneoliberal y el Sumak Kawsay", en SENPLADES, *Foro Internacional: Los Retos Nuev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Memorias, Quito, 18-19 de enero de 2010.

Larrera, Calos(2011), *Yasuní-ITT: Una Iniciativa para Cambiar la Historia,* Fondo para el Logro de los ODM. UNDP. Ecuador.

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Quito.

Lombeyda M., Benjamín(2010), *Propuesta Yasuní-ITT. Análisis Económico, Social y Ambiente.* Facultad de Economía d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Quito.

Luis C., José(2011),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El Trabajo antes que el Capital*, Ediciones ABYA-YALA, Quito.

Main, Alexander(2010), "El Estado como Motor de la Economía, el Valorar del Trabajo por encima del Valor del Capital y los Nuevos Modelos de Propiedad y Producción",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99-105.

Mentinis, Mihalis(2009),『사파디스따의 진화』, 서창현 옮김, 갈무리.

Ministerio Coordinador de Patrimonio Natural y Cultural(2009), *Plan Plurinacional para Eliminar la Discriminación Racial y la Exclusión Ética y Cultural,* Quito.

Oviedo Friere, Atawalloa M.(2011), *Sumakawsay/Cutura de la Vida. Camino Alternativo al Desarrollo,* Sumak Editores, Quito.

Ramírez, René(2010a), "Socialismo del Sumak Kawsay o Biosocialismo Republicano" en SENPLADES(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55-76.

Ramírez, René(2010b), "Sugunda Mesa: El Estado como motor de la economía, el Valor del Trabajo por encima del Valor del Capital y Nuevos Modelos de Propiedad y Producción", en SENPLADES, *Foro*

Internacional: Los nuev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Memorias, Quito, 18-19 de enero de 2010.

Ramírez, René(2011a), "Postsocialismo del Sumak Kawsay", Ponencia preparado para el Seminario Internacional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Otras Visiones sobre Desarrollo y Estado organizado por FLACSO, 9 y 10 de junio de 2011, Quito, FLACSO, pp.1-13.

Ramírez, René(2011b), Socialismo del Sumak Kawsay o Biosocialismo Republicano, SENPLADES, Documento de Trabajo No.2, Quito.

Roa, Tatiano(2009), "Sumak Kawsay como Expresión de la Descolonialidad del Poder", http://www.iniciativaambiental.net/noticias (2011.12.16).

Romo, Maria Paula(2010), "Primera Mesa: El Constitucionalismo Postneoliberal y el Sumak Kawsay", en SENPLADES, *Foro Internacional: Los Retos Nuev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Memorias, Quito, 18-19 de enero de 2010.

Santos, Boaventura de Souza(2007), "La Reinvención del Estado y el Estado Plurinacional", OSAL, CLACSO, No.22, Buenos Aires, pp.25-46.

Santos, Boaventura de Souza(2010a), "Hablamos del Socialismo del Buen Vivir",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452, Quito, pp.6-9.

Santos, Boaventura de Souza(2010b), *Refundación del Estado en América Latina: Perspectiva desde una Epistemología del Sur*, Ediciones ABYA-YALA, Quito.

SENPLADES(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Quito.

SENPLADES(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2010),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Suárez, Diana Quirola(2009), "Sumak Kawsay. Hacia un Nuevo Pacto Social en Armonía con la Naturaleza", en Alberto Acosta,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Ediciones ABYA-YALA, Quito, pp. 103-114.

Weber, Gabriela(2011), *Debates sobre Cooperación y Modelos de Desarrollo. Perspectivas desde la Sociedad Civil en el Ecuador*, Centro de Investigaciones CIUDAD, Quito.

http://lalineadefuego.info/2011/04/13 (2012.04.24).

http://www.fae.usacj.cl (2012.04.24).

논문투고일자: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31일